

출력 일자: 2002/11/29

발송번호 : 9-5-2002-042420785
발송일자 : 2002.11.28
제출기일 : 2003.01.28

수신 : 서울 마포구 도화2동 37번지 진도빌딩 12층
김명신 귀하

121-732

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원인 명칭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(출원인코드: 519980849672)
 주소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우라 1쵸메 1방 1고
대리인 성명 김명신
 주소 서울 마포구 도화2동 37번지 진도빌딩 12층
출원번호 10-2001-7006835
발명의 명칭 탄성 표면파 장치



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/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)

[이유]

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- 아 래 -

1. 본원발명의 청구범위 전항은 탄성표면파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압전성기판, 한쌍의 빗살형 전극, 표면파의 전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성을 갖는 복수의 영역을 구비한 트랜스듀스를 2개 이상 가지며, 이 트랜스듀스 중 적어도 2개가 서로 병렬 접속되어 있는 것등을 특징으로 하는데, 이는 표면음향파 필터에 관한 것으로서 트랜스듀스, 대칭형 2방향성 트랜스듀스, 제 2트랜스듀스의 2개의 부분에 대응하여 한개에 병렬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등으로 구성된 인용참증 1(일본국 특개소 63-266911호)과 탄성표면파필터에 관한 것으로서 압전기판, 1DT, 탄성표면파의 전파 방향을 대칭축으로 한 대칭구조로 된 것등으로 구성된 인용참증 2(일본국 특개평 11-266138호)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라면 본원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

[참 부]

참부 1 일본공개특허공보 소63-266911호(1988.11.04) 1부
참부2 일본공개특허공보 평11-266138호(1999.09.28) 1부 끝.

2002.11.28

특허청

심사4국

전자 심사담당관실

심사관 김재운



출력 일자: 2002/11/29

<<안내>>
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☎ 042)481-567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특허청 직원 모두는 깨끗한 특허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만일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원의 부조리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홈페이지(www.kipo.go.kr)내 부조리신고센터